

2008년 7월 23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보 도 자 료

노동부 근로기준과

과	장	임	무	송
담당사무관		이	후	송

- ▶ 2008. 7. 22 배포
- ▶ 총 쪽 (사진 없음)

T E L : 2110-7399
E-MAIL : sejong20@molab.go.kr
F A X : 503-669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내년도 최저임금, 4,000원으로 확정 고시

- 전년대비 6.1%인상, 2,085천명 근로자 혜택 -

- '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,000원(일급 8시간 기준 32,000원)으로 확정·고시 되었다.
 - 이는 올해 3,770원에 비해 6.1%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.1%에 해당하는 2,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- 노동부는 지난 6.27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·사·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,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.
-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·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'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,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.

- 또한, 근로시간이 단축(주44→40시간)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, 연장·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.
-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“경제가 어렵지만 노·사·공익대표가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하여 교육·홍보와 지도·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-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면 된다.

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

(단위 : 원, %, 천명)

연 도	적 용 대 상	최저임금액	인상률	적용대상 근로자수	수 혜 근로자수	영향률
1988	10인이상 제조업	(1그룹)시간급 462.50 일급 3,700 (2그룹)시간급 487.50 일급 3,900	-	2,267	94	4.2
1989	제조업, 광업, 건설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600 일 급 4,800	평 균 26.3 1그룹 29.7 2그룹 23.1	3,053	328	10.7
1990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690 일 급 5,520	15.0	4,386	187	4.3
1991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820 일 급 6,560	18.8	4,556	393	8.6
1992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925 일 급 7,400	12.8	4,620	392	8.5
1993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005 일 급 8,040	8.6	5,045	228	4.5
'94.1~ '94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085 일 급 8,680	8.0	4,916	102	2.1
'94.9~ '95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170 일 급 9,360	7.8	4,864	103	2.1
'95.9~ '96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275 일 급 10,200	9.0	5,381	103	1.9
'96.9~ '97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400 일 급 11,200	9.8	5,240	127	2.4
'97.9~ '98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485 일 급 11,880	6.1	5,350	124	2.3
'98.9~ '99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이상)	시간급 1,525 일 급 12,200	2.7	5,136	23	0.4
'99.9~ '00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5인이상)	시간급 1,600 일 급 12,800	4.9	5,031	54	1.1
'00.9~ '01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5인이상)	시간급 1,865 일 급 14,920	16.6	6,692	141	2.1
'01.9~ '02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100 일 급 16,800	12.6	7,152	201	2.8
'02.9~ '03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275 일 급 18,200	8.3	13,216	849	6.4
'03.9~ '04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510 일 급 20,080	10.3	13,631	1,035	7.6
'04.9~ '05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840 일 급 22,720	13.1	14,149	1,245	8.8
'05.9~ '06.12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3,100 일 급 24,800	9.2	14,584	1,503	10.3
'07.1~ '07.12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3,480 일 급 27,840	12.3	14,968	1,784	11.9
'08.1~ '08.12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3,770 일 급 30,160	8.3	15,351	2,124	13.8
'09.1~ '09.12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4,000 일 급 32,000	6.1	15,882	2,085	13.1

* 주 : 영향률 = 수혜근로자 수 / 적용대상 근로자수(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)

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

□ 적용기간 : 2009.1.1 ~ 2009.12.31

□ 최저임금액

○ 시간급 4,000원(8시간 기준 일급 32,000원)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

□ 적용범위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

○ 감액적용 대상

-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: 최장 3개월간 10% 감액 적용 가능
-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: 20% 감액 적용 가능

○ 적용제외 대상

-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
-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, 가사사용인,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
□ 사용자의 의무

○ 최저임금 주지의무

- 사용자는 2008.12.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
- ※ 주지사항 : ▲ 최저임금액 ▲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▲ 효력발생일 ▲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
○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

-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
- ※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
-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(주 44→40시간)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○ 도급인의 연대책임

-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,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

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

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

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
- 소정근로시간(근로일)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(연·월차휴가근로수당, 휴일·연장·야간근로수당, 일·숙직수당 등)
- 생활보조적·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로 문의 바랍니다.